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76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7년 1월 15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
- 부위원장 명칭을 부의장으로 용어를 정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간사 명칭변경

-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함. (안제54조, 안제66조, 67조의2)

나. 용어 정정

- 부위원장 명칭을 부의장으로 용어를 바로잡음.(안 제67조의2)

3. 개정규칙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66조제3항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67조의2(준용규정) “부위원장을 간사로”를 “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 <u>간사와</u>	제54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 <u>부위원장과</u>
제66조(위원회 회의록) ①~② (생략) ③ <u>간사가</u>	제66조(위원회 회의록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<u>부위원장이</u>
제67조의2(준용규정) <u>부위원장을 간사로</u>	제67조의2(준용규정) <u>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</u>